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임원의 범죄경력 공시 의무 신설 〉

- 김현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029호)
- 김승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357호)

2026. 3.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I. 제안경위

가. 김현정의원안

1. 제 안 자 : 김현정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6. 1. 14.
3. 회 부 일 : 2026. 1. 15.

나. 김승원의원안

1. 제 안 자 : 김승원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1. 27.
3. 회 부 일 : 2026. 1.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김현정의원안

현행법은 사업보고서 등 공시 규정을 두어 회사의 사업내용이나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 중요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돕도록 하고 있음.

임원에 대한 사항으로는 임원보수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회

사 임직원의 배임, 횡령 등 금융시장을 교란시키는 범죄들이 빈번히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은 공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서 공시 대상기간 중의 임직원 제재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률상 공시 규정으로 투자자 판단의 주요 기준 중 하나인 임원 전과 이력을 포함시키고 그 대상과 범위를 명시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회사 경영의 중요정보이자 투자판단의 중요요소로서 임원의 금융관계법령에 대한 과거 전과를 공시에 기재하고 투자자에게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제2항 및 제160조제1항).

나. 김승원의원안

현행법은 증권의 발행인에게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시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주권상장법인 등에게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미국, 싱가포르, 홍콩, 호주 등의 사례와 달리 임원의 전과에 대하여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중요정보가 누락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에 「형법」상 사기·횡령·배임 등이나 금융관계법령 위반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

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 사실 및 현황을 기재하도록 하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
는 것임(안 제119조제7항 후단, 제159조제2항제4호의2 및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제160조제1항).

Ⅲ. 검토의견

□ 김현정의원안과 김승원의원안은 사업보고서 등의 기재대상에 임원의 범죄경력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내용임.

○ 먼저, 김현정의원안은 임원이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보고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려는 것임(김현정의원안 제159조제2항제3호의3 신설 등).

○ 다음으로, 김승원의원안은 임원이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 및 경제·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사실을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임원의 범죄경력조회 확인을 위하여 법인의 범죄경력조회 요청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김승원의원안 제119조제7항 후단, 제159조제2항제4호의2 및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제160조제1항).

현 행	김현정의원안	김승원의원안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① ~ ⑥ (생략)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① ~ ⑥ (현행과 같음)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⑦ (현행과 같음)	⑦ ----- ----- ----- ----- ----- . 이

현행	김현정의원안	김승원의원안
다. <후단 신설>		경우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에는 제159조제2항제4호의2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⑧ (생략)	⑧ (현행과 같음)	⑧ (현행과 같음)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생략)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생략)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 ----- ----- ----- -----.
1. ~ 3의2. (생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신설>	3의3. 임원이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의2.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현행	김현정의원안	김승원의원안
		<u>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해당 사실 및 현황</u> <u>가.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48조의2, 제349조 또는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형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경우 및 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또는 제11조의 죄를 범한 경우</u> <u>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u>

현행	김현정의원안	김승원의원안
5. (생략) ③ ~ ⑦ (생략) <u><신설></u>	4. 5.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u>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u> 5.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 <u>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2항제4호의 2의 사항을 작성(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기 위하여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임원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u>

[illegible]

□ “기업공시제도”는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주주, 채권자, 일반투자자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기업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여 스스로의 자유로운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결정을 하도록 하는 제도로¹⁾, 증권신고서(제119조²⁾)와 사업보고서(제159조³⁾)는 현행 「자본시장과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①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각각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은 발행일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대표적인 법정
공시제도 수단임.

- 한편, 같은 법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제재현황을
기재하도록 명시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이를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의 종류, 발행예정기간, 발행횟수, 발행인의 요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모집하거나 매출할 증권의 총액을 일괄하여 기재한 신고서(이하 “일괄신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그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하는 신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때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괄신고와 관련된 서류(이하 “일괄신고추가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행인은 제1항의 신고서와 제2항의 일괄신고서(이하 “증권신고서”라 한다)에 발행인(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및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의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 및 투자익명조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예측정보”라 한다)을 기재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측정보의 기재 또는 표시는 제125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매출규모·이익규모 등 발행인의 영업실적, 그 밖의 경영성과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2. 자본금규모·자금흐름 등 발행인의 재무상태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3. 특정한 사실의 발생 또는 특정한 계획의 수립으로 인한 발행인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상태의 변동 및 일정시점에서의 목표수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발행인의 미래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법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집합투자증권 및 유동화증권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 발행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설립 중인 법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말한다)

자.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서는 회사의 임·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행정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⁵⁾⁶⁾

제168조(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③ 법 제15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9. 그 밖에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③ 영 제125조제1항제3호자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 제재현황

제4-3조(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항) ① 법 제159조제4항 및 영 제168조제3항제9호에 따라 사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라. 제재현황

5)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11-3-1조(제재현황) 회사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 공시대상기간중에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상법, 법, 외부감사법, 공정거래법, 조세관련법, 환경관련법 등 국내외의 금융, 조세 및 환경 관련 법령과 노동, 소비자 보호 및 부정경쟁방지 관련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여 형사처벌이나 행정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일자
2. 제재기관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5. 금전적 처벌(조치)의 경우 해당금액
6. 횡령·배임의 경우 관련금액
7. 사유 및 근거법령
8.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9.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별지 제35호 서식> 작성지침

II. 공시서류작성기준일 및 공시대상기간

2. 사업보고서와 반기·분기보고서에 적용되는 공시대상기간 최근 3사업연도로 한다. 최근 3사업연도는 사업보고서의 경우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사업연도를 말하며, 반기·분기보고서의 경우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2사업연도와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의 중간기간으로 한다.

6) 그 밖에, 한국거래소 규정인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제7조제1항)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제6조제1항)에 따르면 상장법인은 임직원 등(퇴직자 포함)의 횡령·배임혐의가 확인된 때(고발, 기소 등이 있는 때)와 그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때(법원의 확정판결시) 이를 거래소에 신고하여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한국거래소 규정)

제7조(주요경영사항) ①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 그 밖에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주요주주 등의 결정을 말하며, 이 경우 이사회의 결의는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내용을 그 사유 발생일 당일에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다목, 제2호중 가목(7)·나목(4)·다목(4)·라목(4), 제3호중 가목(1)과 나목(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 다음 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재무구조에 변경을 초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을 때

□ 그런데, 이러한 임·직원의 형사처벌에 대한 현행 공시규정은 횡령이나 배임 등 금융·경제 관련 범죄경력이 있는 자가 다른 상장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적용되지 않아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⁷⁾

□ 상장회사 임원의 전과 공시와 관련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 미국의 경우 증권발행시 또는 임원 선임시 해당 임원의 과거 10년 동안의 형사전과, 파산, 금지명령, 금융관련 법규 위반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홍콩, 호주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공시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라.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손익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을 때

- (3) 임·직원 등(퇴직한 자를 포함한다)의 횡령·배임혐의가 확인된 때 및 그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때. 단, 임원이 아닌 직원 등의 경우에는 횡령·배임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 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인 경우로 한한다.

「코스닥시장 공시규정」(한국거래소 규정)

제6조(공시신고 사항) ①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주요주주 등의 결정을 말하며, 이사회의 결의는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내용을 그 사유발생일 당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세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당일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하 제6조의2제1항 단서, 제7조제1항 단서·제2항(사유발생일 당일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2조제4항 및 제30조에서 같다]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다목, 제2호가목의 (9), 제2호나목의 (7), 제2호다목의 (4) 중 채무자가 제3호나목의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제2호라목(7), 제3호나목의 (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 2.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을 때

라.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손익에 관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을 때

- (6) 임원·직원 등(퇴직한 자 포함)의 횡령·배임혐의를 확인한 때 및 횡령금액 상환(고소취하 포함) 등의 진행사항이 확인되거나 횡령·배임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때. 이 경우 직원 등의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기업의 경우 100분의3) 이상의 금액에 한한다.

- 7) 감사원은 2012년 “증권시장 운영 및 감독실태 감사”에서 횡령·배임 등 금융·경제관련 범죄경력이 있는 자가 다른 상장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되더라도 일반 투자자는 이를 알기 어려운 실정이며, 범죄경력을 지닌 임원이 다른 상장회사에서 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한국거래소로 하여금 상장회사 임원의 횡령·배임 등의 전과를 공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출처: 감사원, 「증권시장 운영 및 감독실태 감사 결과보고서」, 2012.)

- 일본의 경우, 임원의 전과 공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회사법」에서 범죄경력자에 대한 이사 선임을 제한하고 있음.

[표1] 임원 범죄경력 공시 주요 해외국 사례

구분	공시 주요사유 및 공시범위	공시대상자
미국	○ [사유] 증권발행시, 이사 선임을 주총 안건으로 상정시 (일종의 수시공시) ○ [범위] 형사전과, 파산, 금지명령, 금융관련 법규 위반 등(과거 10년간) ※ [발행] 증권거래위원회 증권신고서 서식(Form S-1 Item 11(k)) [유통] Proxy 공시 서식(Schedule 14A Item 7(b))	이사, 집행임원 등
싱가포르	○ [사유] 증권발행시, 이사등 임명에 관한 공시시 ○ [범위] 형사전과, 파산, 금지명령, 자격제한, 금융 및 기업 관련 법규 위반, 기타 신뢰성에 의심을 주는 사유 등(과거 10년간 또는 5년간) ※ [발행] 싱가포르통화청(MAS) 증권 및 선물(투자의 제공) (주식과 채권) 규정 (VI.의 C. 관련) [유통] 싱가포르거래소 (SGX) 상장규정(Mainboard Rules)의 Announcement of Specific Information Rule 704, Appendix 7.4.1	이사, 주요임원, 지배주주 등
홍콩	○ [사유] 증권발행시, 임원등의 주요 전과 정보 변동사항 공시 ○ [범위] 형사전과, 파산, 자격제한, 금융 및 기업 관련 법규 위반, 기타 신뢰성에 의심을 주는 사유 등 내용 공시(과거 10년간) ※ [발행 및 유통] 홍콩거래소(HKEx) 상장규정(Main Board Listing Rules)	이사, 감사, 집행이사 등
호주	○ [사유] 증권발행시, 주총회소집통지시 ○ [범위] 형사전과, 파산, 자격제한, 금융 및 기업 관련 법규 위반 등 (과거 10년간) ※ [발행] 호주금융감독위원회(ASIC)의 규제지침(RG : Regulatory Guide) [유통] ASX의 유권해석	이사와 주요경영진 등
일본	(해당사항 없음) * 범죄경력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받고 그 집행 종료등 때까지 이사 선임 제한, 제한적인 경우 종료등 후 2년 이내까지 선임 제한(「회사법」 제33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자료: 금융위원회)

□ 이에 개정안은 상장회사의 임원 등이 금융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 개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개정안은 모두 임원의 범죄경력 공시의무를 신설하려는 취지이나, 공시대상, 공시기간 및 공시방법 등 세부사항은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표2] 임원 범죄경력 공시의무 관련 개정안 비교

구 분		김현정의원안	김승원의원안
공시 대상	임원 범위	○ 등기임원* * 이사 및 감사(「자본시장법」 §9②)	○ 등기임원 외에 업무집행지시자 등 포함* *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이사 이름으로 업무를 집행한 자,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사장 등 업무집행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집행한 자 (「상법」 §401의2①)
	범죄 범위	○ 이 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 위반 ○ 벌금 이상의 형	○ 형법 ¹⁾ , 특정경제범죄법 ²⁾ , 금융관계법령 ³⁾ , 기타 경제·금융 관련 법령 위반 1) 사기, 컴퓨터 사용사기, 준사기, 편의시설부정이용, 부당이득,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배임, 배임수증재 2) 재산국외도피, 수재, 증재, 알선수재, 사금융 알선, 저축 관련 부당행위, 무인가 단기금융업 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금융관계법령 ○ 금고 이상의 형
공시기간		○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3년	○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5년 ○ 집행유예기간 종료일부터 2년 ○ 선고유예기간
공시방법		○ 사업보고서	○ 사업보고서, 증권신고서

- 먼저, 김현정의원안은 공시의 대상이 되는 임원을 등기임원(이사 및 감사)으로 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의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사실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공시기간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으로 설정하고 있음.
- 다음으로, 김승원의원안은 공시대상 임원을 등기임원 외에 업무집행지시자 등⁸⁾ 사실상 임원까지 포함하면서, 「형법」상 사기 및 횡령·배임 등⁹⁾, 「특정경제범죄법」상 재산국외도피, 수재 등¹⁰⁾,

8) 「상법」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 제401조, 제403조 및 제406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이사”로 본다.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 ② 제1항의 경우에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이사는 제1항에 규정된 자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9)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49조(부당이득) ①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에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재산국외도피의 죄) ①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켰을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해당 범죄행위의 목적물 가액(이하 이 조에서 “도피액”이라 한다)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제5조(수재 등의 죄) ①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供與)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③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제6조(중재 등의 죄) ① 제5조에 따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황을 알면서 교부받은 사람은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제7조(알선수재의 죄)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사금융 알선 등의 죄)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등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또는 소속 금융회사등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였을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저축 관련 부당행위의 죄) ① 저축을 하는 사람 또는 저축을 중개하는 사람이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으로부터 그 저축에 관하여 법령 또는 약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융회사등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진 이자, 복금(福金), 보험금, 배당금, 보수 외에 어떤 명목으로든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저축을 하는 사람이 그 저축과 관련하여 그 저축을 중개하는 자 또는 그 저축과 관계없는 제3자에게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출등을 받게 하였을 때 또는 저축을 중개하는 사람이 그 저축과 관련하여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출등을 받거나 그 저축과 관계없는 제3자에게 대출등을 받게 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③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대출등을 하였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제11조(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제22호(단기금융업무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영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자, 할인 및 수입료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수료액”이라 한다)이 연 1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수료액이 연 10억원 이상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수수료액이 연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일 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른 금융관계법령¹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금융 관

1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금융관계법령”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말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금융관련법령)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법, 이 영 및 다음 각 호의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의2.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2. 「공인회계사법」
- 2의2.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 2의3.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 2의4. 「국민연금법」(제124조 및 제128조제3항제4호로 한정한다)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3의2.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 3의3.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4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7. 「금융지주회사법」
- 7의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7의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7의4.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8.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9. 「기술보증기금법」
10.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10의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11. 「농업협동조합법」
12. 「담보부사채신탁법」
1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1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15의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16. 「보험업법」
1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18. 「부동산투자회사법」
1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 「산업발전법」
21. 「상호저축은행법」
22. 「새마을금고법」
- 22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23. 「선박투자회사법」
24.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25. 「수산업협동조합법」
26. 「신용보증기금법」
2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8. 「신용협동조합법」
29. 「여신전문금융업법」
30. 「예금자보호법」
- 30의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31. 「외국인투자 촉진법」
32. 「외국환거래법」
33.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34. 「은행법」
- 34의2.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 34의3.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7. 「전자금융거래법」
- 37의2.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38.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9. 「주택법」
40. 「중소기업은행법」
41. 삭제 <2022. 8. 23.>
4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4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4. 「한국산업은행법」
45. 「한국수출입은행법」
46. 「한국은행법」
4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48. 「한국투자공사법」
4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런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집행 종료 또는 면제일부터 5년 동안 그 사실을 사업보고서 및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장법인에 대한 임원의 횡령, 배임, 사기 등의 범죄 및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등의 법률 위반행위는 불특정다수의 투자자들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나아가 자본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될 수 있어 그 폐해가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은 임원의 과거 전과사항에 대한 공시를 통하여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상장회사 임원의 범죄를 간접적으로 예방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최근 5년간 상장회사 임·직원의 횡령·배임이 총 191건(2조 8,314억원)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은 투자자 피해 방지 및 자본시장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표3] 최근 5년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횡령·배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유가 증권	건수	13	4	12	10	10	49
	금액	973,181	26,213	192,037	148,090	132,311	1,471,832
코스닥	건수	31	18	28	38	27	142
	금액	502,777	303,097	212,672	230,313	110,693	1,359,552
계	건수	44	22	40	48	37	191
	금액	1,475,959	329,310	404,709	378,403	243,004	2,831,385

주: 횡령·배임혐의 발생 공시 기준(최종공시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개정안은 현행 공시제도에 비해 임원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범죄경력까지 공시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개정안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제한될 수 있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임원의 범죄경력 공시 의무 도입 시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달성하면서 사익의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시대상, 공시기간, 공시방법을 합리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 먼저 공시대상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① 임원의 범위를 김현정의원안에서는 등기임원으로, 김승원의원안에서는 등기임원과 업무집행지시자 등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기 여부만으로 임원의 범위를 한정할 경우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무집행지시자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② 한편, 공시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김현정의원안은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의 위반”으로, 김승원의원안은 “「형법」상 사기 및 횡령·배임 등의 죄, 「특정경제범죄법」상 재

산국외도피 및 수재 등의 죄, 「금융사지배구조법」상 금융관계법령의 위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공시대상 범죄행위를 법률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김승원의원안과 같은 입법방식이 명확성 원칙의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다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은 시행령을 통한 공시범위의 과도한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③ 한편, 김현정의원안과 김승원의원안은 각각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를 공시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벌금 이상의 형까지 공시를 의무화할 경우 경미한 사건까지 공시대상에 해당하여 과잉 공시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공시기간에 대하여 살펴보면, 김현정의원안과 김승원의원안은 공시기간을 각각 형 집행 종료 후 3년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장 영향력과 정보 접근성이 높은 상장법인 임원의 범죄경력에 대한 공시제도의 실효성, 범죄경력 공시 관련 해외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²⁾ 다만, 김승원의원안은 선고유예 시 유예기간 동안에

12)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금융사지배구조법」상 임원의 결격사유, 「자본시장법」상 법령 위반 시 임원 선임 제한 규정을 감안하여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도 그 사실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선고유예의 경우에만
지 공시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는 선고유예 제도의 취
지¹³⁾ 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마지막으로, 김현정의원안은 사업보고서, 김승원의원안은 사업보고
서 및 증권신고서를 **공시방법**으로 각각 설정하고 있는데, 투자자
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경력은 합병이나
유상증자 등의 경우에도 공시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증권신고서
에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의3(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426조에 따른 조사 결과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하 이 조에서 "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명령(이하 이 조에서 "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계좌 개설, 매매, 대여, 차입 및 그 밖의 거래. 다만, 거래의 성격,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법인등"이라 한다)의 임원[「상법」에 따른 집행임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이 경우 "금융회사"는 "주권상장법인등"으로 본다)를 포함한다]으로서의 선임·재임(在任)

② 제1항에 따른 제한기간을 정할 때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제한기간은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 13) 선고유예(宣告猶豫, Verwarnung mit Strafvorbehalt, the conditional release)란 범정(犯情)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제59조). 형법이 인정하고 있는 제재 가운데 가장 가벼운 제재라고 할 수 있다. 형의 선고를 유예하여 피고인에게 처벌을 받았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것이 사회복귀에 도움이 된다는 특별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선고유예는 특별예방을 위한 책임주의의 중대한 양보를 의미한다. (출처: 이재상·장영민·강동범, 『형법총론』, 2018., pp.623~624.)

○ 셋째, 김승원의원안 제159조제8항은 법인이 임원 본인의 동의를 받아 시·도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있는데, 현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범죄경력조회를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¹⁴⁾하고 있으므로, 공시 주체인 법인이 임원의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이러한 근거규정이 신설된다 하더라도 개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바,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이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향후

14)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귀화·국적회복·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준사관·부사관·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개정안 심사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금융위원회**는 상장회사 임원의 중요 전과에 대한 공시가 투자자를 보호하고, 임원의 사기·횡령·배임 등의 범죄를 간접적으로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다만 개정안이 개인 정보 침해에 이르지 않도록 균형잡힌 입법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공시대상을 과도하게 확대할 경우 회사의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범죄까지 포함될 우려가 있고, 사실상 임원 선임의 결격사유로 작용될 수 있어 이중 처벌을 통한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위험이 있으므로, 공시범위와 공시기간을 최소화¹⁵⁾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개정안이 범죄경력 등 형사정보 원칙과 충돌할 뿐 아니라, 투자자 보호는 불확실한 반면 사회적 낙인효과 등 인권침해 소지는 크기 때문에 입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111

15) 집행유예의 경우 유예기간 중으로만 한정하고, 선고유예는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